

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조철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 1332호
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6.

발 의 자 : 조철기, 안장현, 양경모,
정광섭, 홍기후, 김복만,
방한일, 윤기형, 김민수,
유성재, 신순옥, 이지윤,
박미옥, 박정수, 편삼범,
이연희, 이정우, 김옥수,
박기영, 이해선, 김석곤,
고광철, 이종화, 지민규,
윤희신, 주진하, 이재운,
조길연, 이현숙, 전익현,
정병인, 박정식, 이철수
의원(33인)

1. 제정 이유

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회의 진행 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가치의 확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,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다. 조례 적용대상 규정(안 제4조)

라. 종이 없는 회의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(법률 제20514호, 2024. 10. 22.)
- 나. 성별영향평가 : 별도 개선 사항 없음(2025.05.13., 여성가족정책과)
- 다. 부패영향평가 : 부패발생 요인 없음(2025.05.07., 감사위원회)
- 라. 규제심사 : 행정규제 없음(2025.04.24., 정책기획관)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종이 없는 회의”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.
2. “디지털 기술”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,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본청 및 충청남도의 직속기관·사업소·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한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
2. 자원 확보 및 기반 조성
3.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)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
2.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
3. 그 밖에 도지사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실적 평가 등)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실적을 평가하고, 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규

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,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,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,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○ 안 제5조(기본계획)

-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하여(안 제5조) 기추진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_ 비용미발생

○ 안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

- 부서 자체 시행계획 수립 전제_ 비용미발생

○ 안 제7조(사업)

- 디지털 기술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기존 태블릿PC 30대 운영 및 회의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요금 10백만원 편성 등 기 추진 중_ 추가비용 미발생

○ 안 제8조(실적 평가 등)

- 우수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미계획_ 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-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제정 조례안 근거하여 기본계획(안 제5조),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6조), 사업(안 제7조), 실적 평가 등(안 제8조) 비용이

발생할 수 있음

- 기 추진 및 추가적인 비용 미발생,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
미계획에 따라 미첨부사유서(2호) 제출함

4. 작 성 자

도의회사무처
담 당 관
예산분석팀장

예산정책담당관

조중연

박재용☎ 041-635-5202(budget20@korea.kr)